

자문위원수당 입금의뢰서

건 명 : 강동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계획 검토

상기 건명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 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- 성 명 : 권용우
 - 주민번호 : 480407-1066922
 - 연 락 처 : 010.3923.0277
 - 입금방법
 - 금융기관명 : 국민은행
 - 계좌번호 : 016.05.0016.207
 - 예금주 : 권용우
 - 위원수당 지급내역

구 분	지급액	과세표준	세금지급액			차인지급액	비고
			소득세	주민세	계		
자문수당	261,000	52,200	10,440	1,040	11,480	249,520원	

- 개인정보 보호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
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2017 년 2월 10일

자 문 위 원 권용우(서명)

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

자문위원수당 입금의뢰서

건 명 : 강동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계획 검토

상기 건명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 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성 명 : 김 승 배
- 주민번호 : 611012-1063217
- 연 락 처 : 010-2019-6116
- 입금방법
 - 금융기관명 : SC
 - 계좌번호 : 110-20-075598
 - 예금주 : 김 승 배
- 위원수당 지급내역

구 분	지급액	과세표준	세금지급액			차인지급액	비고
			소득세	주민세	계		
자문수당	261,000	52,200	10,440	1,040	11,480	249,520원	

- 개인정보 보호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

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2017 년 2월 10일

자 문 위 원 김승배 (서명)

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

자문위원수당 입금의뢰서

건 명 : 강동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계획 검토

상기 건명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 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성 명 : **진영환**
- 주민번호 : **540704-1051116**
- 연 락 처 : **재원대학교 재직중함부**
- 입금방법
 - 금융기관명 : **국민은행**
 - 계좌번호 : **630302-94-101808**
 - 예금주 : **진영환**
- 위원수당 지급내역

구 분	지급액	과세표준	세금지급액			차인지급액	비고
			소득세	주민세	계		
자문수당	261,000	52,200	10,440	1,040	11,480	249,520원	

- 개인정보 보호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
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2017 년 2월 10일

자 문 위 원 **진영환** (서명)

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

자문위원수당 입금의뢰서

건 명 : 강동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계획 검토

상기 건명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 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성 명 : **조 용석**
- 주민번호 : **660815-1398534**
- 연 락 처 : **010-3737-0303**
- 입금방법
 - 금융기관명 : **외환**
 - 계좌번호 : **620-244478-490**
 - 예금주 : **조 용석**
- 위원수당 지급내역

구 분	지급액	과세표준	세금지급액			차인지급액	비고
			소득세	주민세	계		
자문수당	261,000	52,200	10,440	1,040	11,480	249,520원	

- 개인정보 보호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
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장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2017 년 2월 10일

자 문 위 원 **조용석** (서명)

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

자문위원수당 입금의뢰서

건 명 : 강동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계획 검토

상기 건명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 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성 명 : 김 목 한
- 주민번호 : 700624-1052413
- 연 락 처 : 90-3098-8838
- 입금방법
 - 금융기관명 : 우리
 - 계좌번호 : 1002-904-872951
 - 예금주 : 김 목 한
- 위원수당 지급내역

구 분	지급액	과세표준	세금지급액			차인지급액	비고
			소득세	주민세	계		
자문수당	261,000	52,200	10,440	1,040	11,480	249,520원	

- 개인정보 보호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
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2017 년 2월 10일

자 문 위 원 김 목 한 (서명)

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